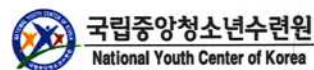


2012.9월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청소년 인권 · 권리교육과정



www.ny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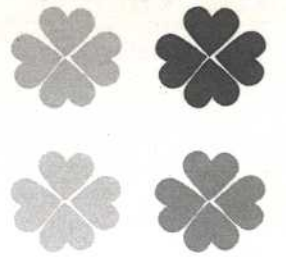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National Youth Center of Korea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2012.9월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청소년 인권 · 권리교육과정



NATIONAL YOUTH CENTER OF KOREA



2012.9월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청소년 인권 · 권리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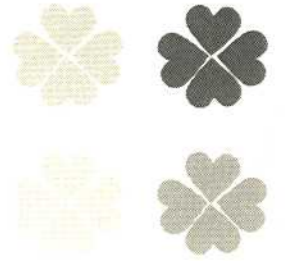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Korea Youth Work Agency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National Youth Center of Korea

NATIONAL
YOUTH CENTER
OF KOREA



2012.9월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청소년 인권 · 권리교육과정



National Youth Center of Korea Training Program Guide

청소년헌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청소년은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미래를 열어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립니다.

청소년은 모든 생명의 가치를 존엄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합니다.

| 청소년의 권리 |

-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집니다.
-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계층,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 청소년은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집니다.
-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가집니다.
-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집니다.
-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집니다.
-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 청소년의 책임 |

-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집니다.
-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 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 청소년은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합니다.
-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 1998년 10월 25일 개정



Contents

▼ 청소년 인권·권리교육과정

☞ 연수개요	1
☞ 일 정 표	2
☞ 강의내용	
1. 청소년권리교육의 이해와 필요성	3
2. 학생인권조례 현장이야기	29
3. 청소년권리교육 원칙과 방법	43
4. 청소년인권행동 사례 '아수나로 이야기'	61
5. 권리교육 콘텐츠별 활용과 효과	75
☞ 연수안내	97

연 수 개 요

■ 관련근거

- ▶ 청소년기본법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 연수목적

- ▶ 청소년활동지도력 배양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배양
- ▶ 정책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고급 정보 제공 및 습득
- ▶ 청소년활동 현장에 대한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동반 성장

■ 연수개요

- ▶ 과정명 : 2012. 9월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 청소년 인권·권리교육과정 -
- ▶ 기간 : 2012. 9. 25(화) ~ 27(목), 2박 3일
- ▶ 대상 : 본과정에 관심있는 지도자 선착순 20명
- ▶ 주관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청소년 인권·권리교육과정

- 장소 : 207호

시간	1일차(9.25)	2일차(9.26)	3일차(9.27)		
08:00~09:00	도착 및 접수	아침 식사			
09:00~10:00		기본원리 청소년권리교육 원칙과 방법 [서울시교육청 인권교육센터 조영상, 이수경 강사]	적용하기 권리교육 콘텐츠별 활용과 효과 [국가인권위원회 문진경 주무관]		
10:00~11:00			맺는마당		
11:00~12:00		점심식사			
12:00~13:00		방법론 I 문화예술을 활용한 청소년권리교육 운영 [상동]			
13:00~14:00				방법론 II 권리 관련 쟁점 토론 프로그램 운영 [상동]	
14:00~15:00					여는마당
15:00~16:00		도입 청소년권리교육의 이해와 필요성 [대구가톨릭대 천정웅 교수]			
16:00~17:00					저녁 식사
17:00~18:00					
18:00~19:00	사례발표 청소년인권행동 사례 '아수나로 중심으로' [아수나로 파이루 활동가]				
19:00~20:00					취
20:00~21:00					
21:00~22:00					

※ 상기 일정은 기관의 사정과 과정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권리교육의 이해와 필요성

▣ 천정웅(대구가톨릭대 교수)

청소년권리교육의 이해와 필요성

1. 청소년권리교육의 중요성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발전과 영속을 위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 도처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UNICEF의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보면, 전세계의 아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 수 있다. 약 22억명의 전세계 어린이와 청소년들 가운데 약 19억명이 발전도상국에 살고 있으며, 1990년 이래로 약 150만 명의 아동들이 국제적 분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UNICEF, 2008). 이러한 처지에 비추어 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이 유엔의 인권에 관련한 조약들 중에서 가장 많은 국가들이 서명하고 비준한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논의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세계 아동의 삶에 관한 현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이용교, 천정웅, 김경준, 2009).

청소년인권은 모든 인간이 갖는 인권에 근거하면서도 청소년이기에 보다 강조되는 인권이 있다. 인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에 따라 확장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인권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다. 오늘 강의 주제인 청소년권리의 주요내용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찾을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은 18세 이하의 자를 말하는데,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법적 규정은 19세 미만 혹은 9세에서 24세 까지의 자를 말하므로 아동권리협약은 청소년인권에 바로 적용될 수 있다. 청소년은 아동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아동권리협약을 그대로 준거할 수 있다는 입장과 아동의 경우에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이 강조되지만, 청소년은 발달단계로 보아 참여권이 좀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이용교, 천정웅, 김경준, 2009).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세계인권선언은 권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아동권리교육을 권고하여 왔다. 아동·청소년권리의 신장을 위해

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자신이 향유하고 준수해야 할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권리교육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인권관점으로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을 갖도록 돕기 위해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활동이 강조되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권리 인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협약의 인지여부에 대한 부모와 아동·청소년의 실태조사에서는 부모의 약 30%, 청소년의 약 20%정도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청소년권리의 실천적 이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각 권리의 영역별 인지에서도 대부분의 부모와 아동·청소년의 인지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청소년권리의 실현은 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인권에 대한 명확한 실천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권리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권교육은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주된 영역을 중심으로 해당 영역의 주요 인권실태와 인권보장을 위한 적절한 절차와 과정 등이 세분화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생의 경우, 학내의 학생인권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교육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다수인보호시설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교육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권교육은 해당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고려하여 그 교육내용과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 글은 아동·청소년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권리의 개념과 발전 역사를 간략히 개관하고, 가장 최근의 국제인권법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을 고찰한다. 나아가 한국의 청소년인권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권리에 대한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청소년현장의 제정과 개정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청소년에게 더 밀접한 관련을 갖는 청소년참여권의 내용과 청소년특별회의 등의 참여시스템에 대해 고찰한다. 끝으로 청소년권리교육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발전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2. 청소년권리의 개념과 범주 및 주요 역사

청소년권리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서 인권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간단한 역사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천정웅·김영지·김경호, 1999). 먼저 지적할 것은 인권에 대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권위적인 개념정의는 아직 없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적 인간이 가

진 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주장 또는 자격, 즉 인간의 본래적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가지는 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주장 또는 자격으로 이해된다.

인권에 대한 용어에는 먼저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이 있다. 이는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이끌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물질적, 비물질적 욕구를 보장해주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목록은 없지만, 생명권, 먹을 권리, 주거의 권리, 의료처치를 받을 권리,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인권은 개인들로 구성된 집합적 집단이 가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집합적 권리, 집단권리의 개념과도 관련된다. 인권에 관해 논의할 때 개인적 인권과 집합적 인권이 동시에 언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수자 인권이나 원주민 인권 등의 예를 생각할 수 있다.

인권에 관한 기본 이해를 위해서는 인권의 3세대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인권의 유형은 제1세대 인권, 제2세대 인권, 제3세대 인권으로 유형화하는 것이다. 첫째, 제1세대 인권은 자유권에 관한 것이다. 타인의 강제로부터 자유라는 소극적 자유의 보장과 관련된다. 투표, 표현, 종교, 사회운동, 집회, 평등, 공정한 재판, 생명권 등 개인적으로 당면한 권리들이 이에 속한다. 제2세대 인권은 본질상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인 사회권을 말한다. 집합적 형태의 권리이며, 건강권,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등이 이러한 진보적 또는 프로그램적 권리에 속한다. 셋째 제3세대 인권은 결속단결권 등의 집단적 권리를 말한다. 경제개발권, 평화권, 안정적이고 공동체적 사회에서 살 권리,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공기, 물, 식량에 대한 환경권, 인간의 완전한 잠재성이 획득되도록 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인권을 세대로 구분한 것은 인권의 연대기적 순서나 위계를 함의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법적 개념적 범주의 의미를 갖는다. 권리를 구분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오늘날 인권과 관련하여 세대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 보다는 오히려, 시민적 인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절대적 권리, 적극적 권리 등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시민적 인권이란 개인이 한 시민사회 속에서 자유를 즐기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평등을 위해 가지고 있는 인권을 말하는 것이다. 사생활의 자유, 표현, 종교, 사회운동의 자유 등과 같은 개인적 자유, 비차별, 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생명권, 개인의 자유와 안전보장 등이 이에 속하는 것이다. 유의할 것은 미국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민권이란 개념이 있는데 이는 시민적 인권과는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종적 평등과 비차별 문제 등과 관련된 일부 시민적 권리는 또한 시민적 인권에도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다.

정치적 인권이란 용어도 있는데 이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정부의 공공정책, 특히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만들고, 변경하고 제안하며, 관리하는 기회를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문화, 경제, 사회적 인권의 개념도 있다. 또한 절대적 권리와 prima facie 권리는 용어가 있다. 전자는 방해하는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존재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한받거나 제약받을 수 없는(nonderogable) 권리로서 국가위기시에도 유보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고문으로 부터의 자유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달리 prima facie 권리는 제한될 수 있는 권리, 보기에는 절대적인 것으로 보이는 본질적인 권리이지만, "제한조항"이 뒤따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복지권, 안전권, 건강권 등은 국가위기시에는 유보될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될 수도 있다(Conde, 1999).

한편, 인권이 가진 가장 고유한 특성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인권의 보편성(universality)이다. 이는 대상이 인간이기만 하면, 인권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천부적 권리이며, 이는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고, 특히 성별, 나이, 학력, 신분, 재산 등 그 사람이 가진 개별적 속성과 전혀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부여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구체적 현실사회에서 인권이 발달되어온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이념적 차원의 인권의 보편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논의와는 다르게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인권의 내용과 범위는 모든 개별사회와 공동체를 포괄할 수 있는 단일성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발전되어 온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나 사회구성체 특유의 문화와 역사에 따라 상당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인권의 내용들은 주로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의 범위 내에서 고유한 역사와 동원가능한 자원의 한계 내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제인권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결성된 국제연합(United Nation)이 보여준 노력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인권이 전혀 국제정치의 관심사항이 되지 못했으며, 주로 국내적 주권문제의 일환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국제연합은 홀로코스트 등 전쟁 중 목격된 비인간적 참상에 대한 반성과 인권에 대한 노력의 상징으로 국제연합헌장 제1조에서 국제연합의 중요한 목적이 인권과 만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임을 천명하였고 1948년 12월 10일 만장일치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채택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립된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cold war)은 국제 인권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지만, 1950년대 이후 식민지 경험을 공통적으로 가진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신

생독립국들이 대거 국제연합에 가입하면서 인권발전은 또 다른 계기를 맞이한다. 1996년 12월에 체결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라는 2개의 규약이 제정된 것이다. 이 두가지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은 앞서 제정된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를 완성하게 된다. 국제인권규약은 1976년 비준에 필요한 35개국 이상 참가국의 공식적 비준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국제규약의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출범하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등의 인권관련 NGO의 활동도 활발해지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UN 총회가 "개발권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to Development)"을 공포하고 고문방지를 위한 협약이 체결되는 등 국제인권의 발전이 꾸준히 이루어지게 된다. 인권이, 사회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심사하기 시작하였고, 1986년에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준수하기 위한 위원회가 창립되었다. 그리고 1989년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됨으로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인권법도 마련되었다. 국제인권의 성장과 제도는 한걸음 더 나아가 1993년 6월 비엔나에서 열린 "인권에 관한 국제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서 "빈 인권선언(Vienna Declaration)"을 채택하게 된다. 국제연합의 최우선 목표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와 보호의 증진이라고 규정하였으며(제4조), "모든 국가들은 그들의 정치, 경제, 문화적 체계의 상이성과 무관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증진해야한다"(제5조)고 선언하였다. 1998년 5월 우리나라 광주에서도 아시아 인권헌장 선언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아시아 인권헌장(Asian Human Rights Charts)"을 채택한 바 있다(손병돈 외, 2008).

3.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해와 한국의 청소년인권 현황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이러한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의 발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또 하나의 큰 진전이었다. 1989년 유엔총회 제44회의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인권법 중의 하나로서 18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전세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최소한의 시민적, 경제적, 사

회적, 문화적, 인간주의적, 정치적 권리를 개념정의하는 인권조약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전의 모든 인권조약에서 담고 있는 광범위한 권리를 표출하고 있으며, 아동이 그들의 복리를 보장받는데 필요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확인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기초에서부터 채택될 때까지 20년 이상이 걸린 작업이었으며, 1978년 폴란드에서 최초로 1979년의 국제아동의 해를 기념하여 유엔에 요구함으로써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비준하였으며 2009년 11월 현재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193개국이 비준하고 있으며, 국제인권법 사상 가장 많은 국제적 동의를 얻고 있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1948) 이후 포괄적인 인권체계를 제시한 문서이면서 동시에 1980년대의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보장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혜를 결집시킨 국제법 규범으로 이해되고 있다. 오늘날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보다 분명해지고, 일관성을 갖고 포괄적인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인한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41개조의 중요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더하여 13개의 절차와 실행관련 조항이 별도로 있다(Covell & Howe, 2001). 전문에서는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밝히고 있으며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또한 비준 국가들로 하여금 각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각 조문은 동 협약의 몇가지 주요 원칙들과의 관련상황에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원칙들에는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제5조), 아동 존엄성의 존중(전문)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차별금지의 원칙(제2조),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제6조), 그리고 아동 의사표현의 권리(제12조) 등이 언급된다. 특히 협약의 핵심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모든 권리의 보장에 있어서 이 원칙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협약을 이를 위해 반드시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모든 일이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 협약은 또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의사표현의 권리를 규정하면서, “아동을 위한 것”이란 이유로 아동과 관련한 사항을 어른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주요 조항

으로 규정하고 있다(Limber & Flekkoy, 1995). 생존권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할 것을 규정한다(제6조). 생존권에는 건강·의료에의 권리(제24조), 의료시설에서 치료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제25조), 사회보장에의 권리(제26조), 그리고 생활수준에의 권리(제27조) 등이 해당된다. 보호권에는 부모에 의한 학대·방임·착취로부터의 보호(제19조), 경제적 착취·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제32조), 마약·향정신성약으로부터의 보호(제33조), 성적착취·학대로 부터의 보호(제34조), 유괴·매춘·매매의 방지(제35조),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제36조), 자유를 빼앗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제37조), 소년사법에 관한 권리(제40조) 등이 포함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또한 당사국들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지지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 가족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의 언급에 이어, 적합한 생활수준(제27조), 교육에의 권리(제28조, 제29조), 휴식·여가·문화적·예술적 생활에의 참여권(제31조) 등이 있다. 또한 참여권에는 의사표현권(제12조), 표현·정보의 자유(제13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제14조), 결사·집회의 자유(제15조), 사생활·통신·명예의 보호(제16조), 그리고 매체 접근권(제17조) 등이 관련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과정에서 국내법과 배치되는 조항을 유보한 바 있는데, 면접교섭권, 입양허가권, 상소권보장 등과 관련한 조항이 그것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준국의 의무로서 1994년 11월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2005년 5월에 제2차 국가보고서를 그리고 2008년 12월에는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를 아동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23년 어린이날을 제정하였으며, 아동의 권리공약 3장을 선포하고, 청소년헌장 제정 및 개정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제 한국의 아동·청소년인권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다(이용교, 2009 참조).

첫째, 아동청소년 정의와 인구현황이다. 한국에서 청소년의 정의는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만 19세 미만의 자”(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이고, 청소년기본법상으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이다. 다른 한편, 아동이 정의는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데,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연령과 일치한다. 이처럼 청소년의 법적 연령과 아동의 법적 연령이 대부분 중복된다. 또한 청소년의 정의가 두 가지라서 다소 혼란스럽지만, 대체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할 때에는 청소년보호법의 기준에 따르고, 청소년을 육

성하고자 할 때에는 청소년기본법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2008 현재 0~24세의 아동·청소년의 인구는 1,49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8%를 차지한다. 그중 남자는 785만명, 여자는 711만 명으로 성비는 110.3 : 100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 52). 전체 인구에서 0~24세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1960년에 전체 인구의 61.3%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였다. 1980년 56.6%에서 1990년 45.9%로 급감하였고, 2000년에 37.4%이었다가 2007년에 31.6%를 나타내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아동의 수와 비중이 급감한 것은 최근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이다.

둘째, 일반원칙과 관련한 현황이다. 한국은 국가보고서를 통해서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신분에 따른 특권과 불합리한 차별 및 연좌제를 금지함으로써 아동에 부당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령차별은 매우 심각하고,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은 심한 인종차별을 겪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의 아동은 인종과 피부색에 의해서 차별받기 쉽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어렵다.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의 국민만을 다루지 않고, 자국의 관할권 안에 있는 모든 아동에게 어떤 종류의 차별도 해서는 안된다고 한 점에서 볼 때 이는 심각한 인종 차별이다.

한국 아동의 권리 중에서 가장 경시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의사 존중의 원칙'이다. 아동의 권리 중에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은 어느 정도 인식이 높아졌지만, 아동의 참여권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아동은 가정과 학교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고 관철할 법적 힘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법 제909조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로 2005년 개정되고, 민법 제912조에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친권행사의 기준이 신설되었지만, 자녀인 아동의 의사 결정권은 여전히 부모에게 유보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이혼을 할 때에 자녀의 양육이나 친권자를 지정할 때 15세 미만은 "의사표명권"조차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즉, 부모가 이혼을 하면 아동은 부모중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의 아동은 법정에서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을 할 권리조차도 없다. 이처럼 아동의 참여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부모나 보호자가 대리할 수 있다는 '가부장적 사고와 생활양식' 때문이다.

셋째,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관한 현황이다. 한국에 민주정부가 수립된 것이 61년이 지났고,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17년이 지났지만 시민적 권리와 자유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19세 미만은 공직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기에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특히 2005년 선거권의

하한선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40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학생회 회칙은 "학생의 정치활동"을 명백히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정치활동이라 함은 정당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당국은 학생이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하는 것조차 정치활동으로 규제할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규제는 교육적 필요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시민적 권리는 직접 실천에 의해서 습득될 수 있다. 또한 "비인도적 취급"이라고 볼 수 있는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이 허용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에서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넷째, 가정환경과 대리보호에 관한 이슈이다. 한국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래로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신장된 대표적인 영역이다. 한국 정부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보육의 사회화를 획기적으로 신장시켰다. 정부는 2009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만 5세아와 장애아에게는 보육료의 전액을 지원하고, 평균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의 자녀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의 80%, 60%, 30%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영아보육율이 낮고,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방과후 보육이 미흡하지만, 미취학 아동의 보육욕구는 상당히 충족되고 있다.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학대받는 아동은 법적 보호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사례를 보고받는 1차 기관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9년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43개소가 있다. 또한 아동학대 상담신고 건수는 2008년 9,570건으로 2001년 4,133건에 비해 2.3배 늘었다. 한국은 아동 1000명 당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이 0.53명(2008년)으로 미국 11.9명(2004년), 일본 1.6명(2005년)보다 낮았으나 이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잠재적인 학대 사례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됐다.

다섯째, 기초보건과 복지분야이다.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통해서 아동의 기초보건과 복지에 획기적인 신장이 있었다. 1980년에 출생 1,000명당 17.3명이던 영아사망율이 1990년에는 12.8명, 2007년에는 4명으로 감소되었다. 이처럼 영아사망율과 모성사망율이 낮아진 것은 산전관리 수진율과 시설(병원)분만율이 거의 100.0%에 가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아동 10만 명

당 안전사고 사망률이 14.8명으로 스웨덴·영국 3.8명, 일본 5.8명, 미국 10.2명 등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의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아동의 사고사망률이 높은 것은 안전시설과 점검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사고에 의한 아동 사망이 매우 크다.

여섯째,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현황이다. 아동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취학률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다. 헌법은 아동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의 무상의무교육을 규정하고, 2004년까지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료하였다. 2008년 취학률은 초등학교 99.0%, 중학교 93.2%, 고등학교 90.0%, 대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기관 67.2%이다. 또한 진학률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99.9%,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 대학(교) 진학률은 83.8%로 매년 증가되고 있다(통계청, 2009). 그런데, 한국의 학교교육은 내용과 질, 만족도 등에서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아침 8시까지 등교하는 "0교시"가 있고, 방과후에도 저녁 10시까지 보충수업, 특기적성교육, 심화학습 등의 명목으로 고등학생들을 학교에 머물게 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은 학생의 삶을 황폐하게 한다. 지나치게 많은 학습시간으로 여가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일곱째, 특별보호조치와 관련한 현황이다. 한국에서 소년비행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2007년 12월 21일 소년법의 전문개정으로 소년의 연령은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20세 미만은 19세 미만으로 하향되었다. 범죄행위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이고, 촉법행위는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또한 우범행위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등의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이다. 소년의 비행을 어떻게 다루냐는 국가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비행소년이 인격형성 과정에 있고 순화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벌보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도 소년법 등에서 소년의 비행을 일반범죄와 달리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셈이다.

소년범죄자는 2007년에 116,135명으로 전체 범죄자 2,548,010명의 4.6%이다.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1997년 7.8%에서 매년 조금씩 줄어서 2005년 3.6%로 감소되었다가 2006년 3.9%, 2007년에 4.6%로 다소 증가되었다. 소년범죄의 유형은 재산범죄 36.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폭력범죄

이 27.5%, 교통사범이 23.7%,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가 2.7%이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이처럼 전체 범죄자중 소년은 극히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는 소년범죄를 과장해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고, 사법처리과정에서 소년범죄자의 변호권 등은 성인범죄자에 비교할 때 경시되는 관행이 있다.

한편, 이러한 우리나라에서의 아동·청소년인권 현황과 관련하여 몇가지 주요 사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대체로 ① 위기 아동·청소년의 대안양육이 체계적이지 못한 점, ② 결혼 이주 여성과 그 자녀는 각종 사회적 차별을 받기 쉬운 점, ③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복합적인 인권문제, ④ 이혼시 자녀의 의사표명권이 미흡하고 양육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미흡하고 아동수당이 없는 점, ⑥ 부모의 빈곤은자녀의 저 력, 저임금 등으로 빈곤이 악순환 되는 점, ⑦ 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점, 그리고 ⑧ 교정보호체계 속에 있는 범죄소년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기 쉽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이용교, 2009).

4. 청소년현장의 제·개정과 청소년참여의 증진

한국에서 청소년인권 관련 헌장이나 권리선언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일제강점기인 1923년 소년운동선언과 1975년 어린이헌장이 제정된 바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것은 1990년 5월 12일에 처음으로 청소년헌장이 제정된 바 있다. 이후 1998년에는 새로운 청소년헌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되는 기존 청소년헌장에 새로운 시각의 청소년상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권리, 책임, 인권, 사회적 책무 등이 명시되었다. 1998년 당시 새로운 청소년헌장의 개정과정에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참여가 강조되었으며, 초안 작성 및 공청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강조되었다.

1990년 청소년헌장이 미래의 주역으로서의 청소년과 성인중심의 보호지도를 강조하는 추상적 선언인데 비해, 개정된 헌장은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을 인정하며 청소년의 자율과 참여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청소년을 미래 삶의 주역일 뿐 아니라, 현재 삶의 주체로 재인식하였으며, 청소년을 자기 삶의 주체로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였다. 당시, 문화관광부의 청소년헌장 개정과 함께, 교육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선언 제정을 추진하였지만, 학생 인권에 대한 학생과 성인과의 커다란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또한 교육부외는 별도로 청소년 스

스로 학생인권서 제정을 추진했으며 통신망을 통해 학생인권선언서가 발표된 바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참여는 결코 최근에서야 대두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학교교육이나 지역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한 적이 없었다. 가족생활을 통해서든 물론, 학교생활, 동료간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다른 사람과의 일상의 활동 등을 통해 항상 참여의 주제와 마주쳐왔다. 주변환경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참여를 형식화 하는 것, 성인의 역할과 제도적 구조, 그러한 참여에 대한 대중의 인정 등은 시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정책과 관련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으로 그 동향을 고찰하기로 한다. 첫째, 한국에서의 아동·청소년참여의 첫번째 동향은 국가 청소년정책과의 관련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독자적 영역으로서의 중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을 갖는 청소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1년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되고 그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의 제정된 때 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 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때이기도 하지만,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1998-2002)을 수립하면서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는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서 다루어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당시 정부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참여권 신장을 주요 정책이념으로 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내면서,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확대, 청소년의 시민권 신장 등을 주요정책 목표로 제시하여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은 당시 같이 제정되었던 새로운 청소년현장과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세대의 주체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준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였다. 청소년을 미래사회의 주인공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전환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천정웅, 1999). 이러한 노력은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과 그 이후의 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지속되었는데, 제3차 계획에서는‘참여’,‘소통’,‘체험’을 이념으로 삼고, “청소년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기반 구축”을 5대 세부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기초와 방향은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발족과 함께 발표된 “새로운 통합적 청소년정책 과제”에서도 “청소년 참여·인권증진사업”을 4대 핵심추진과제로 설정함으로써 참여·인권정책을 핵심적인 정책분야로 확고히 하였다. 당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참여인권팀을 담당조직으로 편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정책참여확대, 청소년 사회참여의 내실화, 청소년의 권리

신장과 공동체 의식 함양 등과 관련한 분야의 정책과제를 추진해 온 바 있다.

둘째, 아동청소년참여와 관련한 또 다른 추세는 청소년 스스로 구성·운영하는 청소년인권단체나 동아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청소년인권 또는 주요 정치적 쟁점이나 국가정책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나타나고 있으며 뜻과 신념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연대하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으로 조직화된 청소년참여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최근의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있었던 전국적 촛불시위에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며, 2002년의 월드컵과 의정부 여중생 추모집회, 그리고 2005년 내신 등 급제 파동 등에서의 청소년의 진출은 이미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등 청소년의 권리신장 활동을 주요관심으로 하는 많은 단체들이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청소년자율참여의 동향과 관련한 하나의 특징은 이러한 참여활동과 단체들은 대부분 청소년들 스스로가 조직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사이버커뮤니티를 통한 청소년참여는 청소년들에게는 일상생활의 주요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많은 사회참여, 정치참여 사례들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2000년도에 “두발제한 반대운동”을 주도했던“채널텐”,“아이두”그리고 18세 청소년선거권 운동모임인“낮추자”등은 사이버상의 청소년참여의 힘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김영지, 2004). 사이버 커뮤니티를 통해 청소년들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함은 물론, 성인들과 수평적 관계맺음과 동등한 발언권을 행사하는 경험도 가지게 되면서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청소년들의 참여는 또한 인터넷 잡지 제작, 사이버토론, 동호회모임과 홈페이지참여 등의 몇가지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한국의 아동·청소년참여와 관련한 일련의 흐름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활동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들며, 개별적으로 때로는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요 현실은 아동·청소년참여의 세계적 동향과 흐름을 같이하는 일이며, 청소년참여권 신장을 위한 중요한 사태진전(development)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에서의 아동·청소년참여증진 노력은 각종 참여활동과 인권정책을 통해 나타난

다. 1998년 이후, 청소년정책 전담기구와 행정조직의 확립을 통해 참여·인권정책을 추진하게 됨으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프로그램으로서의 각종 참여활동이 1998년 이후 활성화된다. 여기서 참여활동은 학교나 학급의 자치활동이나 동아리 활동과, 학교 밖에서의 각종 청소년 위원회 활동 및 각종 참여적 활동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특히, 청소년참여와 관련된 국가 정책사업의 대표적인 것은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 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각종 청소년위원회 활동이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16개 시·도 청소년대표 및 청소년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행정부처에 건의하여 정책화하는 연간과정으로 운영된다. 2004년 시범개최된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중앙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청소년정책이나 사업 등 청소년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자문과 건의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자율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참여활동기구이다. 또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이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나 시설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자치기구이다.

이러한 각종 청소년위원회 활동이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상징하는 사업으로 점차 양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면, 청소년동아리 활동이나 참여적 활동프로그램들은 청소년 중심의 자치적이며 자율적인 집단활동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수련시설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청소년활동과 축제의 중요한 주체로서 청소년동아리활동이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청소년분야의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사업선정을 위한 심사와 평가과정 등이 청소년들이 평가위원 또는 모니터요원으로 참여하는 등 청소년참여를 의무화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5. 청소년권리교육과 실천활동

한편, 인권의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인권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들에게 합당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과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일도 중요하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형식교육 수업형태의 프로그램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학교 밖 아동·청소년 단체 및 시설, 교육청, 상담실, 평생교육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으로 세분화하는 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1> 연령별 아동·청소년인권교육 체계(안)

	목표	핵심 개념	실천	특수한 인권문제	교육기준·도구
초기 아동기 취학전, 3-7세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 · 부모와 교사에 대한 존중 · 타인에 대한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 · 공동체 · 개인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공정성 · 자기표현·경청 · 협력·공조 · 소규모 집단활동·개인 활동 ·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 · 감정입입·민주주의 · 갈등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주의 · 성차별주의 · 불공정성 ·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상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규정 · 가족생활 · 공동체 규정 · 인권선언 · 아동권리협약
후기 아동기 8-11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책임 · 시민권 · 권리, 욕구와 원하는 것의 구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권리 · 집단권 권리, 자유 · 평등, 정의 · 법적 규정 · 정부 · 보장 · 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에 대한 존중 · 공정성 · 사실과 주장의 구별 · 학교와 지역 사회 서비스의 이행 · 시민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편견 · 빈곤·배고픔 · 부정의 · 민족중심주의 · 수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HDR · 인권의 역사 · 지역체계, 국가의 · 법적 체계 · 인권관련 지역과 국가의 역사 · UNESCO, UNICEF · 비정부기구 (NGOs)
청소년기 12-1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한 인권에 대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법 · 세계평화 · 세계개발 · 세계의 정치경제 · 세계 생태주의 · 법적 권리 · 도덕적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관점 이해 · 논리에 기초한 사고 · 조사와 정보의 수집 · 정보의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시 · 동정 · 냉소주의 · 정치적 박해 · 식민주의, 제국주의 · 경제적 세계화 · 환경파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협약 · 인종차별 철폐 · 성차별주의 철폐 · 지역인권협약 · UNHCR · NGOs
후기 청소년 · 청년기 1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기준에 대한 지식 · 인권과 개인적인 의식 및 행동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적 통합·배제 · 도덕적 책임·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조직에 참여 · 시민적 책임의 이행 · 시민 불복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학살 · 고문 · 전쟁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네바협정 · 특수한 협약 · 인권기준의 발전

자료 : Flowers, 1998, OHCHR, 2007를 토대로 재구성

아동·청소년의 권리교육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아동이 특히 침해 받기 쉬운 권리들이 연령별, 발달단계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이용교, 천정웅, 김경준, 2009 제7장 참고). 다시말해, 모든 아동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부응한 적절한 수준의 아동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아동은 영유아기, 초등학교, 청소년기 등 발달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권리를 특히 침해받기 쉽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영유아기에 있는 아동이 침해받기 쉬운 권리는 다음과 같다. 생존권과 관련하여 낙태를 당한 우려가 있다. 보호권과 관련하여, ① 미혼모가 출산할 때 국외로 입양되어 정체성에 혼란을 가질 수 있다, ② 국내에 입양되는 경우에도 자신의 뿌리를 찾기 어렵다, ③ 결혼이주 가정에서 태어날 때 '혼혈'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 ④ 빈곤으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 ⑤ 맞벌이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발달권과 관련하여서는 ① 빈곤 가정의 경우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하기 어렵다, ②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참여권과 관련하여 생각할 것은 영유아의 의견은 흔히 무시되기 쉽다는 점이다.

둘째, 초등학교에 있는 아동이 침해받기 쉬운 권리는 다음과 같다. 생존권과 관련하여, ① 빈곤가정의 경우에 결식의 우려가 있다, ② 빈곤 가정의 경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건강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③ 통학길 보행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 있다. 보호권과 관련하여서는 ① 신체적 학대와 성추행에 노출될 수 있다, ② 방과후에 방임으로 각종 문화적 경험에서 박탈당할 수 있다. 발달권으로는 ①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교육 기회 박탈·정신지체 등의 이유), ② 부모의 이혼시에 적절한 생활지도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참여권과 관련하여서는 ① 부모의 이혼시에 어느쪽 부모와 살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명권이 없다는 점과 ① 이혼시에 부모와의 면접교섭권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침해받기 쉬운 권리는 다음과 같다. 생존권적 측면에서는 ① 0교시의 강요로 아침식사를 결식하기 쉽다, ② 우울 등으로 자살충동을 가질 때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 ③ 패스트푸드 등 몸에 좋지 못한 음식에 노출되기 쉽다, ④ 영양실조보다는 비만으로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호권과 관련해서는 ① 부모나 보호자가 없을 때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되어 방임되기 쉽다, ② 성매수나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 ③ 약물오남용에 노출될 수 있다, ④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각종 범죄 등에 노출될 수 있다, ⑤ 아르바이트에서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⑥ 범죄를 저지를 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발달권은 ① 적절한 진로지도를 받지 못한다, ②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기 어렵다, ③ 자립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사회로 방출될 수 있다, ④ 흔히 여자의 경우에 성차별 문화를 답습하도록 강요받는다, ⑤ 사생활의 권리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⑥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받기 쉽다. 참여권 측면에서는 ①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과 ② 연령차별로 '참정권'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권리교육은 또한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활동으로 이어질 때 의미를 갖는다(이용교, 천정웅, 김경준, 2009 제7장 참고). 첫째, 가정은 아동의 일차적인 인식처이지만,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가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성차별과 연령차별이 남녀유별과 장유유서 등 미풍양속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가정은 아동 권리옹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위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결정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도 인격을 가진 인격체라는 점에서 볼 때 반성할 점이 많다. 예컨대, 자녀의 학원 선택, 대학의 학과 선택, 이사를 할 때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에서 아동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크게 강화하고, 그 내용을 실천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의 생존권, 보호권, 발전권, 참여권에 대한 강조와 관련하여 보면, 학교에서는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아동이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학교운영 전반에 학생의 의사를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내에서의 학생들간의 집단괴롭힘이나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교육적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체벌, 용의검사, 소지품검사, 성적공개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당국과 교사에 의한 아동 인권유린이 '교육적인 이유'로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선도규정 등은 개폐되어야 한다. 학교내에 학생 음부즈맨 등을 두어서 학교당국이 학생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적극 모니터하고 옹호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학교내에서 학생의 참여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를 제도화시켜야 한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인사의 대표로 구성되는데 학습의 주체인 학생의 참여는 지극히 당연하고 아동권리협약의 조항과도 부합된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유해환경 등을 적극 규제하고, 유익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유해환경은 아동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성매매업소, 아동에게 성적 자극을 주는 음란물과 공격성을 충동질하는 대중매체, 신체적 정신적으로 황폐시키는 유해한 화학물질과 약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단위에 유해환경감시단을 만들어서 유해한 물품, 시설, 매체 등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절도, 폭력, 성문제 등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청소년이 비행청소년이 되는 않도록 선도하거나 방지하는 활동도 인권옹호 활동의 하나이다. 특히, 청소년이 범죄의 피해자나 가해가 될 경우 법률지식이 낮아서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적절한 법률 지식을 알려주고, 상담을 통해서 고충을 해결하도록 돕는 청소년상담사업 혹은 인권상담사업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청소년이 많은데, 아르바이트의 임금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야간근무와 연장근무 그리고 휴일근무가 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고용차별에 대한 감시활동도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권옹호 사업이다.

넷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중매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동의 발달에 해를 끼칠 지로 모르는 음란물과 폭력물을 무분별하게 방영하는 것을 자제하고, 아동과 관련된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한국의 언론기관은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건을 뉴스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보도는 피해자이거나 가해용의자인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 또한, 대중매체는 아동의 인권 침해사건을 적극 보도하고 관련 사안을 심층 보도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 특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학대, 아동에 대한 어른들의 성적 학대 등은 은폐되기 쉬운데 대중매체가 심층보도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 대중매체는 그 속성상 아동의 표현의 자유, 발전권, 정보접근권, 참여권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아동이 직접 만든 매체물을 대중매체에서 방영할 수도 있고, 아동이 대중매체를 모니터하고 대중매체를 자신의 생활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가르쳐줄 수 있다.

끝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권보호활동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할 수 있지만, 아동의 생활공간이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가상공간을 통한 활동도 크게 늘려야 할 것이다. 우선 아동의 인권에 대한 침해사례를 인터넷으로 상담할 수 있고, 인권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인권침해를 줄이자는 캠페인을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간의 정보교류를 인터넷을 통해

서 할 수 있고, 국내외 단체와 협력사업을 도모할 수 있다.

6. 청소년인권 증진과 권리교육의 과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은 점차 증진되고 있지만, 그것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에 주로 한정되어 있고,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참여권의 경우는 빈약한 상황이다. 청소년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인권논의를 더욱 활성화하고, 인권교육을 확대·강화하고, 아동·청소년정책을 인권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등, 정책과 제도,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여기서는 아동청소년권리정책 개발,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권리교육의 강화와 체계적 수행, 청소년참여 증진을 위한 성인의 인식전환, 청소년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기회프로그램의 제공 등의 몇가지로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기로 한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공적전달체계를 혁신하고, 아동·청소년 권리관련 민간단체 육성, 기관운영 지원, 권리존중 네트워크를 포함한 사적 전달체계, 그리고 인권지도자 양성, 연구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특히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정부와 협력하고 민간단체·기관 상호간에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이용교, 천정웅, 이중섭, 2009).

둘째, 제도적 장치를 중심으로 보면, 국가적 아동청소년권리기구를 설치하는 것,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 청소년참여기구를 설치하는 것,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법령과 규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아동·청소년인권 관련 전문가를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등 모든 정부기관에 배치하는 일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령차별과 성차별을 당연시하는 법령을 개폐하고, 아동·청소년을 경시하는 관습을 존중하는 관습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셋째,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을 대표하는 아동·청소년인권 지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모니터링 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하고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며, 청소년사망율, 최저생계비 미만 청소년비율, 청소년자살율 등 생존권을 비롯한,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관련 지표를 선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표개발의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생존(survival)"에서 "복지

(well-being)로의 전환, 부정적 지표에서 긍정적 지표로의 전환, 그리고 “전통적” 영역에서 “새로운” 영역으로의 전환 등이 지적되고 있다(Cheon & Lee, 2009; Pitman & Irby, 1997).

넷째, 아동·청소년과 관련 전문가에 대한 권리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에서 인권교육의 체계화, 인권 관련 전문가의 교육과 훈련 등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은 아동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교사 경찰관 법률가 사회복지사처럼 아동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인들을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또한 아동·청소년에게 친화적인 아동·청소년 권리교육 교재(예,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개발되어야 한다. 권리교육 교재는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핵심의제를 다루어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부모용 아동·청소년 권리교육 교재의 개발과 보급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유엔, 국제아동기금, 유네스코 등과 주요 국가에서 개발한 아동·청소년 권리교육 교재의 번역과 보급(예, 영유아가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법, 영유아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법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이용교, 천정웅, 이중섭, 2009).

다섯째, 특히, 청소년의 참여증진을 위해서는, 어른들이 사회를 모두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다는 강박관념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과 일상생활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어른 집단이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을 결정하여 행동에 옮기거나,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구성원들이 진정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충실하게 해내는 것이 사회발전의 가장 기본이다. 국가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은 이미 기성세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으며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전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모든 문제를 어른집단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함으로써 청소년의 역량이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제 어른들은 수퍼맨이고자 하는 그들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기회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를 “성인기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보면 청소년들이 사회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관심을 가지며 참여하는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사회의 선의의 기대에 반하

는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받아주지 않고 붙잡아두기만 한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스스로가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며 소외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지금, 그리고 이 일에서”부터 참여하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막연한 미래를 위해 준비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1cm”를 찾아야 할 때이다.

청소년들에게는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사람보다는 어느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손가락으로 교감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기성세대들은 청소년들을 대할 때 성장과정의 경험이 다른 청소년들을 자신들의 가치기준에 맞추어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간혹 청소년들의 경험세계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시각은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를 좁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각종참여활동을 전개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을 성인과 동등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보장이라는 철학에 바탕한 것이다. 이 점에서, 청소년은 평등한 사회적 존재이며, 잠재능력을 가진 책임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갈 힘있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 손병돈, 김기덕, 권선진, 박지영, 이종복, 이해경, 최승희(2008). 사회복지와 인권, 경기 : 양서원.
- 이용교, 천정웅, 김경준(2009). 청소년인권과 참여, 경기 : 양서원.
- 이용교(2009).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현장적용과 모니터링, 아동청소년권리교육(pp.41-80), 서울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이용교, 천정웅, 이종섭(2009). 기획포럼을 통한 아동청소년권리정책 개발,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 천정웅, 김영지, 김경호(1999). 청소년이 알아야 할 인권이야기,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천정웅, 김미옥, 최명민, 노혜련, 이용교(2009), 강점관점, 청소년개발, 레질리언스, 서울 : 신정.
- 천정웅 (2011). 청소년복지론 : 발전적 관점. 경기 : 양서원.
- 통계청(2009). 2008 한국의 사회지표. 대전 : 통계청.
- Andrews, A. B. & Kaufman, N. H. (1999). *Implementing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development*. Westport, CT : Praeger.
- Cheon, J. & Lee, Y. (Eds.) (2009). *Youth development and youth civic engagement*. Seoul : Yangseowon.
- Conde, H. V. (1999). *A handbook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 Terminology*. Lincoln, NE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Covell, K. & Howe, R. B. (2001). *The challenge of children's rights for Canada*. Waterloo, Ontario :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 Flowers, N. (1998). (Ed.) *Human rights here and now : Celebrat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Minneapolis, MN : Amnesty International USA & University of Minnesota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 Limber, S. P. & Flekkoy, M. G. (1995). *The U.N. Conh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Its relevance for social scientists*. *Social Policy Report*, 9(2), 1-15.
- OHCHR. (2007). *Teaching Human Rights : practical activites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New York, NY : United Nation.
- Pittman, K. & Irby, M. (1997). Promoting investment in life skills for youth : Beyond indicators for survival and problem prevention. In A. Ben-Arieh & H. Winterberger (Eds.), *Measuring and monitoring the state of children-Beyond survival*(239-246). Vienna : European Centre for Social Welfare Policy and Research.
- UNICEF(2008). *The stage of the world's children 2008 : Child survival*. New York, NY : UNICEF.

|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홍보과정 |

학생인권조례 현장이야기

| 김 형 욱(경기도교육청 인권옹호관)

학생인권과 학교

학생인권조례 현장 이야기, 현황과 과제

김영옥(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불편한 진실

- 나는 '학생인권'이라는 단어가 불편하다.
- 나는 '학생인권'이라는 단어가 불편하지 않다.
하지만.....
- 현실에서는 제한적 허용?이 더 설득력이 있다?

내가 꿈꾸는 학교, 그러나

- 오늘도 웃는 얼굴로 즐겁게 생활하는 학생과 선생님
- 하지만, 슬프고 속상해하면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학생과 선생님
-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이 폭언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곳도 있다.
- 견장을 수 없는 아이들과 그 앞에서 선 '나'라는 작은 존재
- 힘내시라고 응원만 하기에는 ... 어떻게든 개선되어야 한다.

학생문제의 다양한 요인

-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때문?
- 학교 밖, 가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 인성, 규범의식 결여
- 게임, TV, 인터넷 등에 노출된 아이들
- 자극, 즉흥, 집중력 감퇴,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아이들
- 갈 곳이 없이 배회하고 있는 아이들
- 예전부터 있었던 잠재된 부당함에 대한 이외제기

학생과 교사와의 갈등

- 욕하는 아이들, 개기는 아이들
-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아이들
- 학생선도(지도, 징계 등)가 불가능한 아이들
- 약속(약금, 학교생활규정)을 지키지 않는 아이들
- 인권을 함부로 남용하는 아이들
- 선생님은 우리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아이들

갈등에 맞서는 선생님들

- 학생 이해를 전제로 대화에 나서는 선생님들

“지랄 총량의 법칙”

모든 인간에게는 인생 쓰고 죽어야 하는 '지랄'의 총량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 정해진 양을 사춘기에 다 써버리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늘 바람이 나서 그 양을 소비하기도 한다. 어쨌든 인간은 죽기 전까지 반드시 써야 하는 '지랄'이 있다.

(출처) 불편에도 관참아, 김두식 지음, 창비

- 대화의 주인공은 학생이어야 효과적이다.
- 갈등의 문제는 오개, 결과로만 되지 않는다.
- “선생님들이 조금만 이해해주면 우리 청소년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 하지만 ...

- 학생은 미성숙한 인간이 아니다.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 보호의 대상으로만 파악한다면, 학생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사회적 환경과 이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가 선행하게 된다.
- 그 결과, 학생의 의견은 존중 받지 못하고, 또한 학생은 자신과 관련한 일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 당하게 된다.
- 참여의 기회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된 학생은 무력감, 실망감, 포기감을 느끼게 되고, 다시 미성숙한 자로 회귀하게 된다.
- 이러한 막대한의 그리움을 겪고, 학생이 상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인사회가 지원해야 한다.

학생생활지도의 교육적 효과

- 언행일치의 일관성 있고, 명확하고 단호한 생활지도
- 효과적인 생활지도를 위한 교사 인화
-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 수단과 목적의 정당성
 - 아무리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절차와 방법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 이유에 대해 학생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교육적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음.
 - 갈등 재생산의 원인

학생 행동에 대한 통찰과 대처

- 교육전문가로서 교사의 '교육적 통찰력'
- 학생의 의견이나 행동이 제멋대로인가?
아니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인지 먼저 파악해 보려는 '통찰'의 자세 필요.
- 학생의 행동에 즉각적인 반응과 대처는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

'잉크 방울'을 떨어뜨리는 아이들

- 학급에서 한 두 명의 학생이 떨어뜨리는 잉크방울로 인해 교사는 교육권을, 다른 학생들은 수업권을 명백히 침해 당하고 있다.
- 여교사를 향한 무분별한 행동
 - 가정에서의 성 역할의 문제
 - 여성 차별
 - 약한 존재라는 편견
 - 유해 영상물에 노출된 아이들 ; 잘못된 성의식

학교생활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이들

- “나는 약속을 한 적 없다.”
- 권한을 부여 받지 못한 학생들은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다.
 - 권한 부여를 거부하는 아이들
 - 모든 것을 귀찮아하는 아이들
 -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아이들
- 왜, 거부하고, 귀찮아하고, 알아서 하라고 할까?
 - 무기력감, 의욕상실...
 - 성취감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

생활지도는 단호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 상호간의 공동의 문제의식
- 학급약속, 학교생활규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 절차와 인권적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학생의 의견존중, 대화를 통한 조정
 - 학생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잉크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
 - 학생의 의견과 교사의 설득으로 참여시키기
- 약속과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게시하기
- 또한, 약속 위반에 대한 절차와 조치 등도 함께 게시하기
 - 부당징계에 대한 상담, 징계 내용 공지 금지 등.
- 잊지 않게 하고, 지속적으로 인지시켜 가면서 더 좋은 방법 찾기
 - 약속은 대화와 합리적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달리 정할 수 있다.

학생인권과 인권을 함부로 남용하는 아이들 ~ 학생인권의 이해

- 학생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고, 인권의 주체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교육공동체의 지원과 노력
 - 교사는 잠재적 학생인권 침해자가 아니다.
 - 일차적 학생인권옹호의 주체이다.
-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보장
-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와 소통의 기회 확대
 -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의 조화

학생인권과 인권을 함부로 남용하는 아이들 ~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 한국 교육의 양적, 질적 성장의 역사는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 보다 나은 질적 성장과 인권사의 실현을 위해서
- 학생인권은 교사의 교육활동에 위축시키고, 열정과 사기를 꺾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 학생인권은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와 학교를 지원한 것이다.
- 더 나아가, 학생인권은 가정과 지역사회를 학생친화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생인권과 인권을 함부로 남용하는 아이들 ~ “선생님, 인권침해가 아닌가요?”

- 당황하거나,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반응하지 않기
- 왜?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지 시간을 주고, 학급토론의 기회로 삼기; 하지만, 권한부여에 당황하는 아이들.
- 인권적 약속 만들기
- 이를 위해서도 교사도 인권에 관심을 갖고 깊이 있는 이해 필요
- 인권문제 상담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 소개
 - 학생과 대화를 통한 오해와 갈등 해소
 - 옹호관 제도는 조례 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대화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

- 차별, 편견, 무시, 폭언, 폭행...
- 교사의 지도권한과 수업권에 대한 이해는 대화와 설득만으로 부족하다.
-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이 되어 보는 다양한 기회 제공
 - 학급단위의 적극적인 인권교육의 필요성
 - 인권교육의 기본적인 상호존중과 배려다.
- 교사, 학생 동행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
 - 책을 통해 서로의 마음과 입장 공유하기

대화를 통한 합리적 갈등 조정 I

- 대화 자체가 ‘인권’이다
 - 교육, 복지, 소년사범 등 관련 법률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의견존중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의미와 적용
- 학생의 의견존중, 참여의 권리 보장
 - 참여기와 학대와 결정과정에서의 참여
- 교사의 교육전문성을 살리며, 학생인권과의 조화를 위해
- 학생을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다양한 시도들
 - 고내 시스템으로서 ‘교사 학생간 양자협의회’ 구성
 - 의견존중, 반영, 피드백
 - 학생상담과 대화를 중시하는 학교들.
 - 다양한 문제해결의 열쇠는 오히려 학생이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신뢰와 지원

대화를 통한 합리적 갈등 조정 II

- 관리, 통제, 지도, 훈계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가 아닌, 학생 스스로가 삶의 주체로, 타인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화
- 학생 내면의 갈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학생도, 교사도 너무 힘들다.
- 중전의 교사주도의 일방적 문제해결 방식에서 학생과 함께, 학생이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함.
 -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학급과 학교

대화에서 '권한 부여'로

- 권한 부여: “한 번 마음껏 펼쳐 보아라.”
“선생님은 여러분의 곁에 늘 함께 있겠다.”
- 기다림의 교육
- 자꾸, 선생님의 의견을 묻는 아이들.
- 건설적인 대화의 시작.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즐겁고 행복한 학교,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회복을 위한 제언

- 교육정책이나 제도로만 이룰 수 없는 복잡하고 중층적인 문제
- 적어도 건강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면,
-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특히 '가정의 교육력 회복'
- 건강한 인간관계는 수업이 살아 있고, 학교문화가 건강하며,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에서 가능하다.
-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건강한 대화

즐겁고 행복한 학교,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회복을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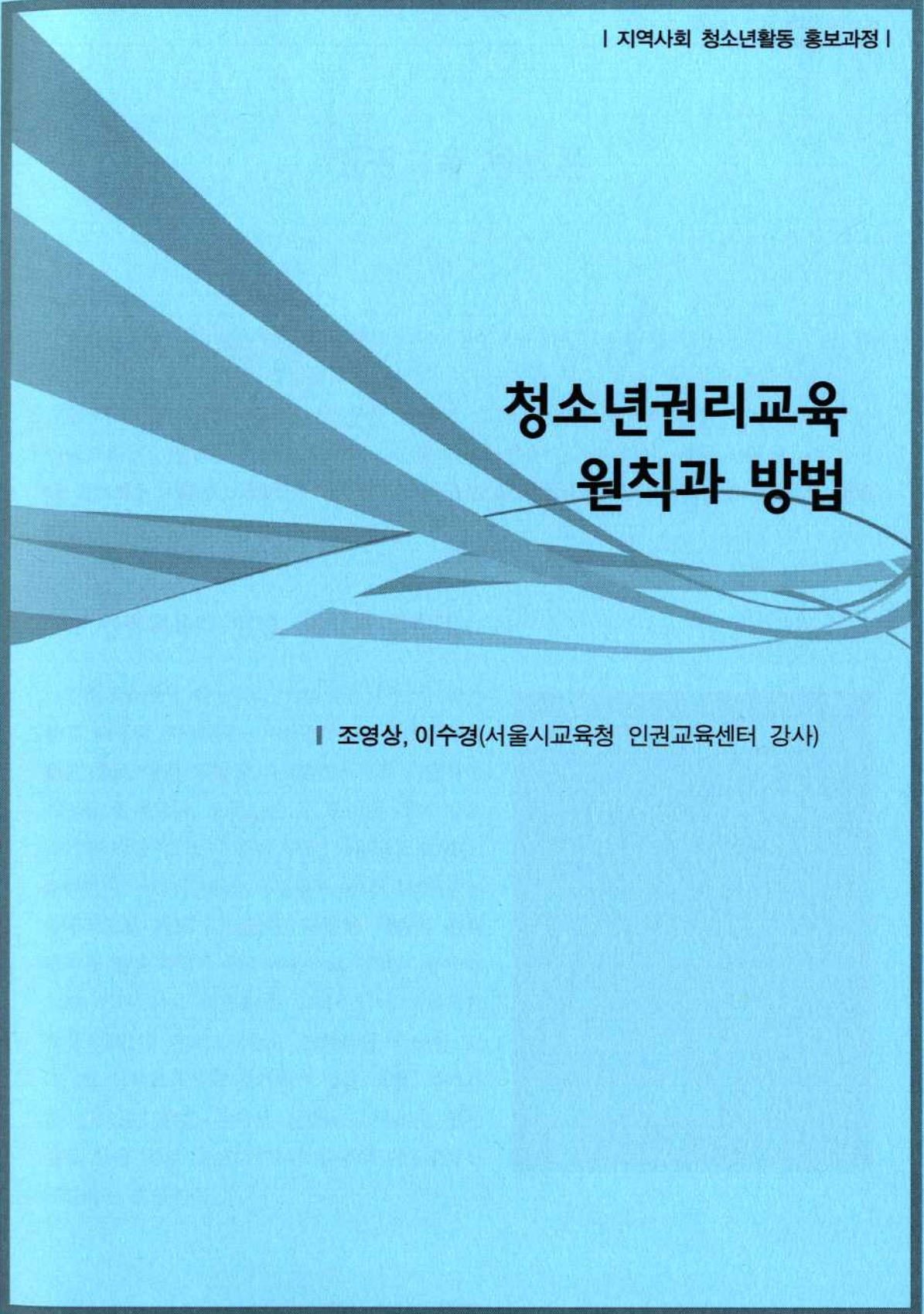
-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 언제나 교사는 리더?
- 상아관계에서 '파트너 관계'로
- “이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 학생과 관련한 다양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학생의 의견을 경청
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서로의 역할 분담에 대해 결
정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자. 학생은 교사의 파트너로 책임을
다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즐겁고 행복한 학교,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회복을 위한 제언

-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으로 성장하기 바라다면, 학생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올려버리지 말자.
기성세대의 생각에 종다고 한 것들이 반드시 학생에게 최선이
없고 도움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언제나 교사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따르게 한다면, 학생은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
결코 성장할 수 없다.
- 학생도 교사도 '인권'이라는 단어는 알지만,
'인권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서로가 잘 모른다.
잘 모르기에 '인권'이 학교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고,
진정한 배움의 장이 될 수 있게 하느니라 가늠하지 못한다.

기남을 아쉬워하며

○ 가끔씩 우리 기성세대들은 아이들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관리와 통제, 지도를 하지 않으면, 또한 일부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면 어나가거나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지 못할 것이라 여긴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주체적인 정화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통제기제는 늘 필요하게 된다. 이로 인한 아이들과의 갈등과 마찰, 이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청소년권리교육 원칙과 방법

| 조영상, 이수경(서울시교육청 인권교육센터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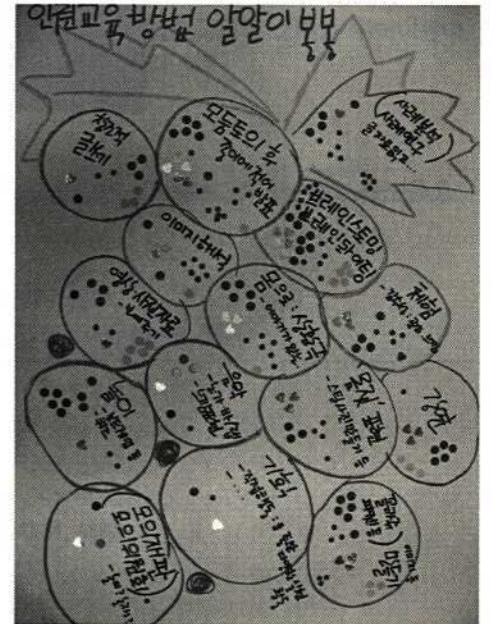
인권교육 방법론

인권교육에서는 일방적인 강의 방식보다는 참여적인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연극, 그림, 놀이, 모둠토론 등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된다. 인권교육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인권교육이 참으로 다채롭고 흥미진진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인권교육을 여러 번 접한 사람들이나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은 활동이 단조롭다는 느낌을 갖기도 한다. 하는 사람이 재미있어야 참여하는 사람도 재미있는 법인데……. 인권교육 방법론의 배가 부딪힐 수 있는 두 번째 암초는 바로 교육 방법의 단조로움이다.

1. 인권교육의 방법, 이렇게 많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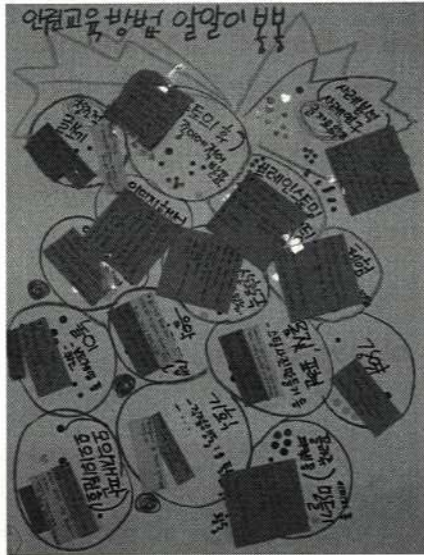
인권교육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늘어놓고 너무나 다채롭다. 이 중에서도 인권교육가들은 주로 어떤 기법을 선호할까? 주로 사용하는 기법을 물어보니, 모둠토론 후 종이에 적어 발표하기나 만들기, 놀이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음악이나 이미지 해석, 직접행동, 몸짓 표현 등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았다. 다양한 기법이 존재하지만 몇몇 기법만 주로 사용되고 있었던 셈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교육공간이 제한적인 데다 개발된 프로그램들도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또 인권교육가도 자기에게 맞는 방법,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혼자서 진행해도 무리가 없는 방법 등을 주로 고르다 보니 활동의 단조로움이 나타나는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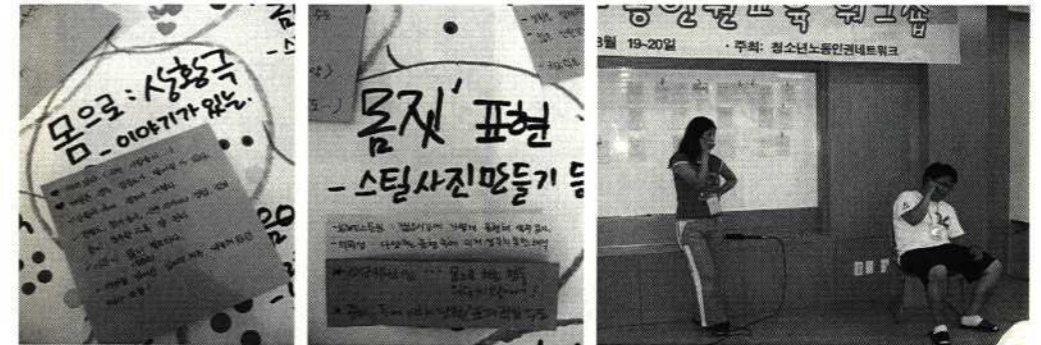
2. 장단점을 제대로 알고 익히면 더 넓은 세계가!

각각의 기법들이 가진 장단점을 제대로 알면 활용 범위가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다. 또 그 기법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미리 꼭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잘 따져보고 활용한다면, 인권교육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수 있다. 다양한 기법에 대한 도전이 쌓이면 인권교육 프로그램도 더 다채로워지고 더 나은 질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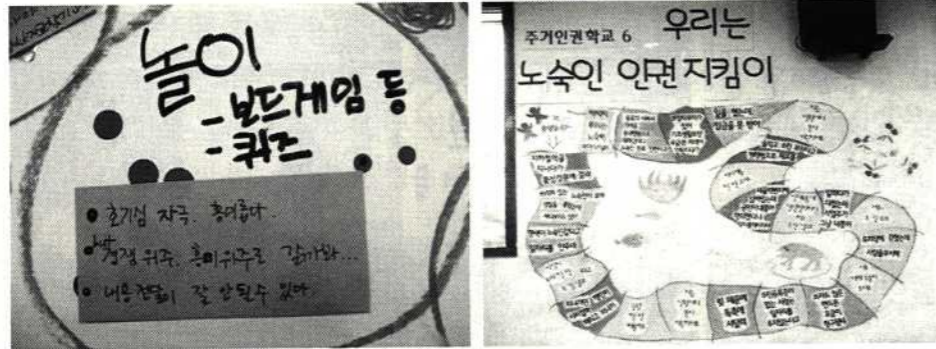
요목조목 하나씩 살펴본 각 기법들의 장단점과 주의할 점을 하나씩 따라가보도록 하자.

1) 상황극, 몸짓 표현 등 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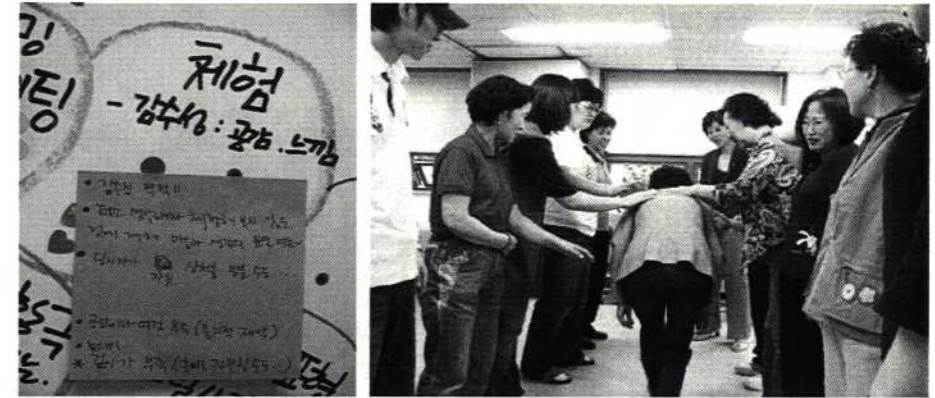
활동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황을 재현한 스틸사진(정지 동작) 만들기 ○ 상황극, 이야기가 있는 창작 연극 ○ 실제 겪은 일들을 재현해보는 연극 ○ 상황극 속에 다른 해결책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토론연극 ○ 모의재판, 모의 노동위원회 ○ 미래의 어느 날을 재현하는 연극(보고 싶은 인권뉴스)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미있다, 생동감이 넘친다 ○ 즉흥성이 불러오는 매력이 있다. 의외의 해석 속에 새로운 교육의 소재가 튀어나온다. ○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문화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 실제 상황을 간접 체험해볼 수 있다. ○ 공감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 보는 사람도 위로를 받는다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설플 경우 집중도가 떨어지고 밋밋하다 ○ 형식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서는 불편하다 ○ 솔직한 이야기를 듣지 못할 때는 실패 위험이 높다 ○ 몸짓 만들기의 경우, 표면적인 이야기 정도에만 머무를 수 있다
따져볼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로 활용할 만한 충분한 공간의 확보 ○ 마음이 충분히 열려 있나 ○ 참여자들이 몸으로 이야기하는 데 익숙한가. (친숙하지 않을 경우 정지 동작 만들기로) ○ 참여 동기를 유발할 만한 적절한 상황, 구체적 사례 ○ 창의성 있는 참가자 ○ 몸짓 언어를 읽을 수 있는 진행자 ○ 피해 상황에 대한 마음 밑바닥으로부터의 공감 ○ 참여자들의 성, 몸 경험, 장애 등에 대한 사전 숙고

2)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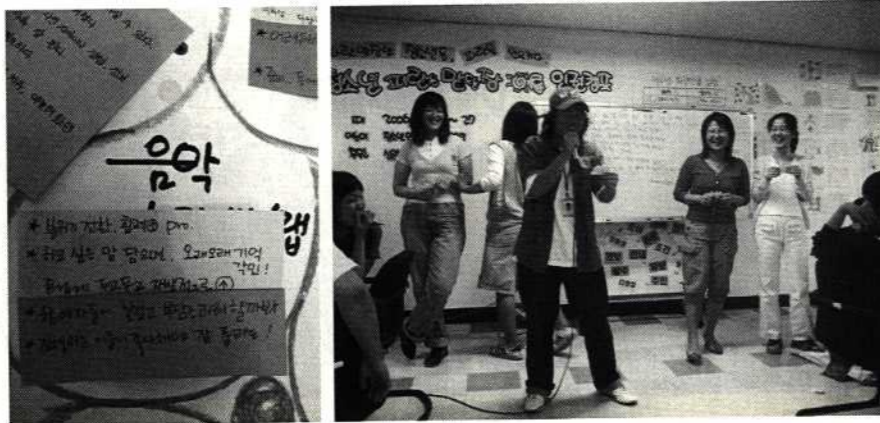
활동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 상황을 헤쳐 나가는 말판 놀이 ○ 도전 골든벨, OX퀴즈 ○ 빙고 놀이 ○ 불평등 이어달리기 ○ 인권의 소리/몸짓/색깔 찾기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흥미롭다 ○ 모두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다 ○ 재미 속에서 인권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다 ○ 교육이지만 동시에 쉽다 ○ 인권이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깰 수 있다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칫 흥미 위주로만 흐를 수 있다 ○ 경쟁이 가열돼 인권의 가치와 대립할 수 있다 ○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 퀴즈의 경우 정보 전달에만 그칠 뿐 감수성을 깨우기엔 역부족이다 ○ 승패에 따른 보상을 들여올 경우 인권의 가치를 해칠 수 있다 ○ 장애, 섹슈얼리티 등이 섞여 있을 때 누구나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놀이를 찾아내기 힘들다
따져볼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목적에 짓눌려 너무 어렵지 않은 놀이의 발명 ○ 경쟁적이기보다 협력적인 방식의 놀이 ○ 마음과 머리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놀이 ○ 놀이의 재미를 살릴 수 있는 유쾌한 진행자 ○ 참여자들의 장애, 성별, 친밀도 등에 대한 사전 숙고

3)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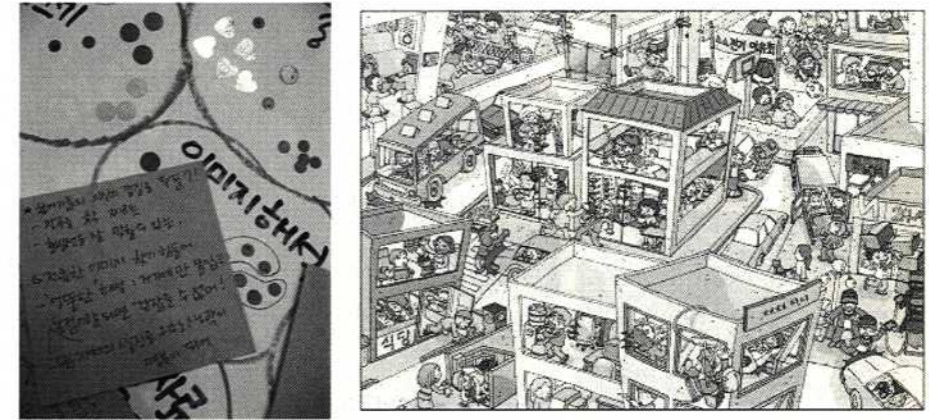
활동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체험,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 상황 체험하기 ○ 차별 조건을 극대화시킨 차별의 방 여행하기 ○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적 언어를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맞추기 ○ 현장 견학과 체험 ○ 특정 사건이 자기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자리를 이동해보는 체험놀이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보다는 행동. 감수성을 짝짝 키울 수 있다 ○ 평소 생각해보거나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초대받아 생각의 문화를 활짝 열 수 있다 ○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차별을 당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몸이 기억한다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칫 재미, 흥미 위주로 흘러 소수자들을 희화화시킬 수 있다 ○ 참여자 가운데 소수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들의 상처를 건드릴 수 있다 ○ 논의를 깊이있게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 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는다 ○ 차별 상황에 깊이 빠짐으로써 무력감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 구조보다는 개인의 편견과 같은 문제점에만 주목하게 만들 수도 있다
따져볼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황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대사와 연기력을 갖춘 진행자 ○ 체험을 놀이가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단계적 접근 ○ 개인적인 소감에 그치지 않고 주제와 잘 연결시켜주는 피드백 ○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토닥여줄 수 있는 진행자 ○ 체험과정에서 드러난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을 놓치지 않는 진행자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후속 교육 ○ 차별에 맞서 일어난 사람들의 사례와 차별을 발생시키는 구조에 관한 정리 ○ 너무 적지 않은 숫자의 참여자, 여러 명의 진행자 ○ 충분하고 안전한 공간의 확보 ○ 인권이 존중되는 상황, 더 자유로워진 상황 등도 체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프로그램

4)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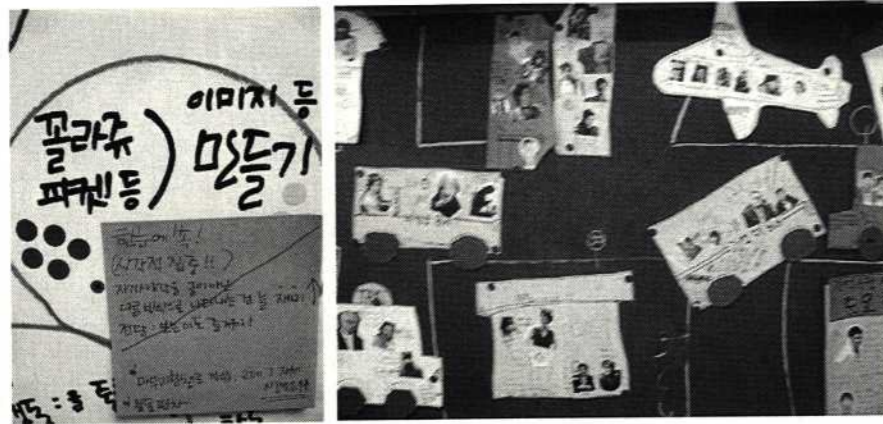
활동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 랩으로 인권 침해 상황 표현하기 ○ 인권을 주제로 한 노래 찾아 대항전 ○ 노래를 듣고 느낌이나 경험 나누기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위기를 띄우고 활력을 불어넣는 데 효과적이다 ○ 하고 싶었던 말을 익숙한 노랫말에 실어 보면, 오래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다 ○ 하나의 공감대를 만들 수 있다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들의 열띤 참여와 창조성이 없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 창조적이거나 재미있어야 한다는 압박이 외려 깊이있는 내용을 담지 못하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표면적인 이야기에만 그칠 수 있다 ○ 인권교육가도 음악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없어야 가능하다 ○ 악기나 음향 장비가 없을 때 분위기를 띄우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따져볼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에게 친숙하거나 따라 부르기 쉬운 음악 찾기 ○ 주제에 꼭 맞는 음악의 발견 ○ 음악을 갖고 놀 줄 아는 진행자 ○ 필요한 악기나 음향장비 ○ 내용을 잘 담을 수 있게끔 주제에 다가설 수 있는 사전 교육

5) 이미지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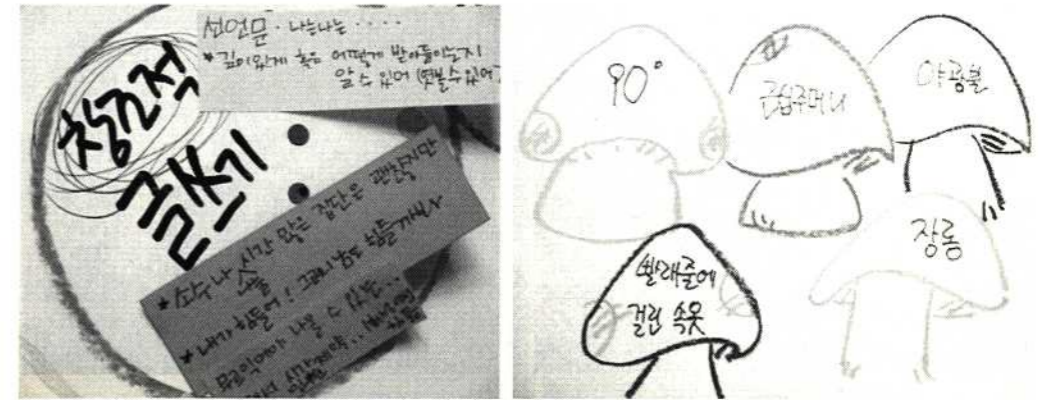
활동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침해 상황이 숨어 있는 그림판 해석 ○ 주어진 그림과 인권의 의미를 연결시켜 인권포스터 만들기 ○ 만평,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픽토그램(그림문자), 광고판에서 숨어 있는 인권 문제 찾기 ○ 주어진 상황에 대해 인권침해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기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을 앞에 두고 있으니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쉽다 ○ 다양한 상상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 나이나 장애 등을 구애받지 않고 쉽게 주제에 접근할 수 있다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석의 다양성이 열려 있다 보니, 애초 의도했던 바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다 ○ 성별 역할 분업 등 기존의 고정관념을 오히려 강화하는 그림이 사용될 수 있다
따져볼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 ○ 다양한 상황과 반응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진행자 ○ 다양한 해석들을 거쳐 종착점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마음 ○ 해석에만 머무르지 않고 변화를 꿈꿔볼 수 있는 후속 활동

6) 콜라주, 포스터 등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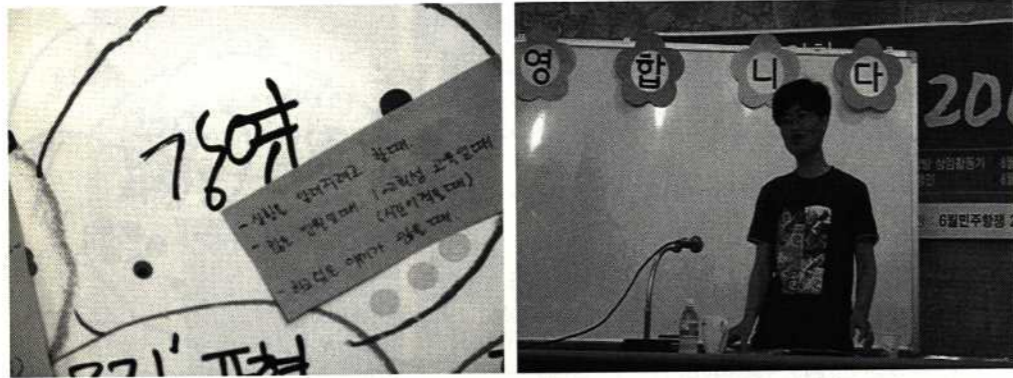
활동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을 나무에 빗대어 그리기 ○ 인권을 주제로 한 포스터, 피켓, 티셔츠 등 만들기 ○ 자아상 조각하기 ○ 신문, 잡지 등을 이용한 콜라주 만들기 ○ 이미지를 점차 확대해가면서 숨은 인권 문제 찾기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눈에 쏙 핵심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다 ○ 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보는 색다른 재미가 있다 ○ 다양성의 힘을 직접 느낄 수 있다 ○ 다음 작품이 기다려져 교육이 재미있다 ○ 기대 밖의 창조적인 표현으로 새로운 인식의 문이 열릴 수 있다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들기 소재로 활용되는 사진이 상품화되고 획일화된 이미지를 담고 있어 자칫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 ○ 다양한 표현들 속에 정작 주제가 무엇인지를 놓칠 위험이 있다 ○ 마음에 들어가 있는 생각을 꼬집어내기에는 좋으나 새로운 경험과 시야를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따져볼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다양한 이미지들 ○ 다양한 표현 형식에서 인권 내용을 꿰뚫어볼 수 있는 날카로운 진행자 ○ 이미지의 빈틈을 메워주는 후속 활동

7) 창조적 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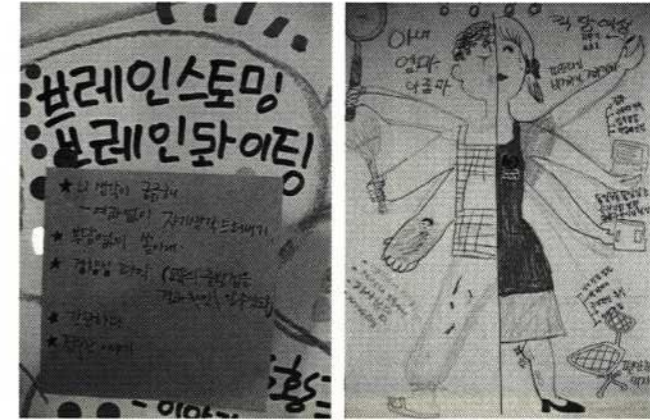
활동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견을 담은 시나 동화 등을 인권적인 시나 동화로 바꿔 보기 ○ 소수자들을 드러내는 은유 찾기 ○ 인권 이야기가 담긴 글을 읽고 자기 인권 이야기 써보기 ○ 보고 싶은 인권 뉴스, 인권 신문 만들기 ○ 이야기 이어 가기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관점을 담은 글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 자기 구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이야기 이어 쓰기처럼 열려 있는 결론은 다양한 경험으로의 초대를 가능케 한다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의 제약이 크다 ○ 참여자들의 인식이 무르익어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 ○ 주제가 제한적일 때 다양한 글쓰기가 제한될 수 있다 ○ 참여자 수가 많을 때는 작품 나눌 시간이 충분치 않다 ○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 주제, 분량 등으로 적절한 작품을 구하기 쉽지 않다
따져볼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쓰기에 익숙한 참여자 ○ 구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 감동을 줄 수 있는 대안적인 사례 작품 찾기 ○ 창조적 글쓰기에 자질이 있는 진행자 ○ 참여자들이 창작한 작품을 서로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 만들기

8) 강연



활동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주제의 전문가를 모신 강연 ○ 여러 이야기손님들이 등장하는 생생토크 ○ 당사자와의 만남과 대화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짧은 시간 안에 충분한 정보 습득이 가능하다 ○ 가슴에 남을 만한 정신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 당사자와의 만남은 그 주제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경계심을 낮출 수 있다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적인 정보나 가치 전달에 머무를 수 있다 ○ 참여자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피드백을 받기 힘들다 ○ 지루해지기 쉽다 ○ 참여자들끼리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다 ○ 참여자들이 다양한 연령대이거나 사회적 위치나 경험이 천차만별일 경우, 강연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어야 할지 대상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져볼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하러 온 사람이라는 확신 주기 ○ 이목을 집중시키는 슷이 들어가는 한 순간이 담긴 내용 ○ 수백 명의 적 앞에 선 느낌을 극복할 수 있는 배짱 있는 강연자 ○ 참여자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에 대한 사전 파악 ○ 강연 주제에 참여자들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도입 활동(질문 던지기, 게시판 토론과 같은 간단한 참여활동 등) ○ 참여자의 눈높이와 경험에 맞는 생생한 사례와 귀에 감기는 언어 ○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마이크, 돌아다니는 마이크 ○ 참여자들의 마음을 끌고 나가는 내용과 힘(적재적소에 배치된 질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추임새,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장치, 적합한 시각자료나 소품 등) ○ 적절한 쉬는 시간

9) 브레인스토밍/브레인라이팅



활동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의 각 신체기관과 인권을 연결해 보기 ○ 소수자들을 위한 권리 목록을 떠올려 인권 법상 처리기 ○ 드라마 속 등장인물을 노동자인가 아닌가로 간략 분류해보기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깊이 있는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참여자들이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다 ○ 옳다 그르다는 평가가 없으므로 부담없이 이야기를 쏟아낼 수 있다 ○ 참여자들이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 사전 파악이 가능하다 (교육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할지 확인할 수 있다) ○ 간단한 활동으로 인권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와 관심을 끄집어낸다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쏟아져 나온 너무 다양한 생각들로 자칫 교육의 무게 중심을 잃을 수 있다 ○ 참여자들이 이미 갖고 들어온 것을 끄집어내는 활동인 만큼, 참여자에 따라 활동 결과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
따져볼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을 통해 무엇을 끄집어내고자 하는지 명확한 목표 세우기 ○ 부담 없이 자기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분위기 ○ 인권과 배치되는 생각들이 나왔을 때 그 생각들을 다룰 수 있는 적절한 후속 활동 ○ 다음 활동과의 명확한 관계 설정